

유연근무제 가이드

INDEX

| I | 선택근무제 | | Ш | 탄력근무제 | |
|---|---------------|---------|----|--------------------|---------|
| | 1. 선택근무제 운영기준 | 4 - 15 | | 1. 탄력근무제 운영기준 | 28 - 30 |
| | 2. Q&A | 16 - 21 | | 2. Q&A | 31 |
| | 간주근무제 | | IV |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개정 | 33 - |
| | 1. 간주근무제 운영기준 | 23 - 24 | | | |
| Ш | | 23 - 24 | IV | | |

25 - 26

2.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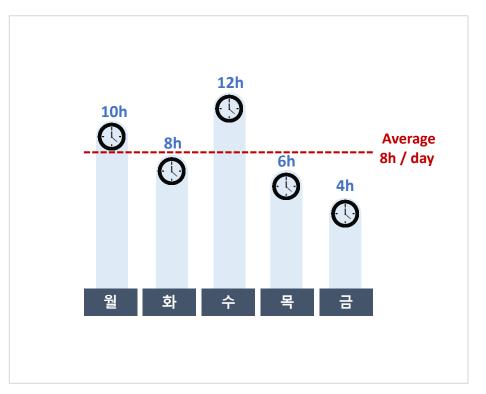
선택근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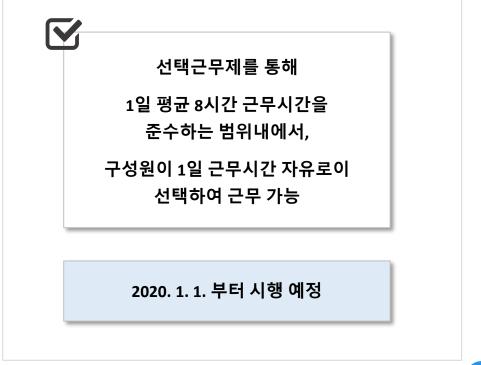


선택근무제란?



- 선택근무제란 구성원이 1개월의 정산기간 동안 1주 평균 40시간 되도록 1일의 근무시간을 조절하여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구성원 개개인의 업무일정 및 업무량에 따라 1일, 1주의 근무시간과 출퇴근시간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및 총근무시간



- R&D, Operations(production 및 repair 제외), TAC, Finance, HR, Admin 직원이 선택근무제적용대상이며, 필요한 경우에만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 적용 가능합니다.
- 1개월 단위 정산기간으로 총근무시간을 관리·운영 합니다.

적용 대상

- ■R&D, Operations(production 및 repair 제외), Technical Assistant center, Finance, HR, Admin(R&D, Sales) 직원
- 단, 관리자인 부서장(R&D, Operations, Sales)은 적용 제외

적용 기준

- 평소에는 9:00 ~ 18:00 근무 수행이 원칙
- 다만, 업무량 증가로 인하여 선택근무제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근무제 및 의무근무시간에 대한 결재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적용 가능

정산 기간

■1개월:매월초일~말일

총 근무 시간

- ■당월 소정근무일(주말 및 공휴일제외) X 8시간
- ■소정근무일(월-금)에 근무해야 하는 총 시간을 의미

[Jan 2020]

| Mon | Tue | Wed | Thr | Fri | Sat | Sun |
|-----|-----|-----|-----|-----|-----|-----|
|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31 | | |

- 정산기간: 1.1~1.31 (1개월)
- 소정근무일: 20일(주말, 공휴일 제외)
- 총근무시간: 20일 X 8시간 = 160 시간

근무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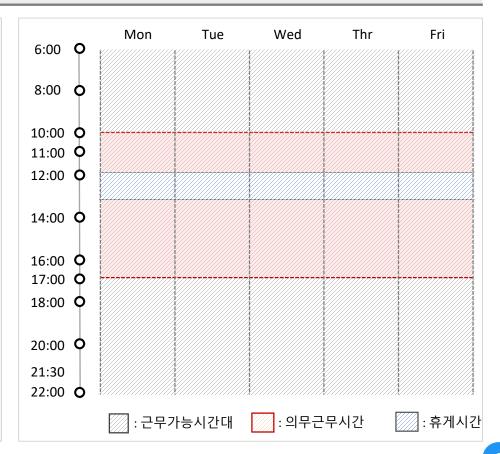
■ 근무가능 시간대에서 의무근무시간을 준수하면서 1일의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무가능 시간대 ■소정근무일(월-금) 06:00~22:00 - 근무가능 시간대 이외 근무는 사전 승인 필요

의무 근무시간 ■소정근무일(월-금) 10:00~17:00 - 1일 최소 6시간 의무 근무

휴게시간

- ■12:00~13:00 1시간
- ■의무근무시간 외: 4시간 근무마다 30분 부여



^{*} 본 문서는 VIAVI Solutions Korea의 자산이므로 외부유출을 엄격히 금합니다.

[예시] 선택근무제 활용 예시

시기별로 업무량이 변동하는 직원은 바쁜 시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덜 바쁜 시기에는 1일 8시간 미만으로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Jan 2020] Example of Selective work hour schedule

| Mon | Tue | Wed | Thr | Fri | Sat | Sun |
|-----------------|----------|----------|----------------|-----------------------------|-----|-----|
| | | 1 | 2 6H | 3 6H | 4 | 5 |
| 6 6 H | 7 6H | 8 6H | 9 6H | 10 6H | 11 | 12 |
| 13 8H | 14 8H | 15 6H | 16 8H | 17 Annual leave 8H | 18 | 19 |
| 20 8H | 21 8H | 22 8H | 23 8H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31 | | |
| | 12H | 12H | 12H | 12H | | |

| `20 | `20.1월 총근무시간 | | | | | |
|-----|--------------|------|--|--|--|--|
| 1주 | 주 근무시간 | 12H | | | | |
| 17 | 누적 근무시간 | 12H | | | | |
| ٠, | 주 근무시간 | 30H | | | | |
| 2주 | 누적 근무시간 | 42H | | | | |
| 3주 | 주 근무시간 | 38H | | | | |
| 3⊤ | 누적 근무시간 | 80H | | | | |
| ۸, | 주 근무시간 | 32H | | | | |
| 4주 | 누적 근무시간 | 112H | | | | |
| 5주 | 주 근무시간 | 48H | | | | |
| >⊤ | 누적 근무시간 | 160H | | | | |

- ■월말 마감 등으로 바쁜 업무
- ■시기별 업무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하여 근무 가능

^{*} 본 문서는 VIAVI Solutions Korea의 자산이므로 외부유출을 엄격히 금합니다.

시간외근무



- 직원 및 결재권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간외(연장·야간·휴일) 근무가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 시간외근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차 부·팀장 → 2차 본부장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연장 근무

- ■정산기간내 총근무시간을 초과한 근무
- 발생시점 : "총근무시간 누적근무시간 -잔여의무근무시간 (잔여근무일 x 6H) < 0"
- 한도: 1개월 평균 1주당 12시간(휴일근무 포함)
- 포괄임금제에 따라 1주 3.5시간(= 1개월15.5시간)의 연장근무에 대하여는 급여에 이미 포함

야간 근무

- ■22:00 ~ 다음날 06:00 근무
- 한도: 연장근무에 포함되어 한도가 적용됨

휴일 근무

- ■주말, 공휴일, 근로자의 날 근무
- 한도: 1주 평균 12시간(연장근무 포함)

[Jan 2020]

| Mon | Tue | Wed | Thr | Fri | Sat | Sun |
|-----|-----|-----|-----|-----|-----|-----|
|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31 | | |

: 연장근무 가능일

: 휴일근무

[예시] 연장근무 산정

- 연장근무는 해당월 총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입니다.
- 연장근무 발생 시점 = 총근무시간 누적 근무시간 잔여의무근무시간 (잔여일 x 6H) < 0

[Jan 2020] Example of Selective work hour schedule

| Mon | Tue | Wed | Thr | Fri | Sat | Sun | `20 | .1월 총근무시간 | 160H |
|-----|-----|-----|-----|--------------|-----|-----|-----|-----------|------|
| | | 1 | 2 | 3 | 4 | 5 | 1주 | 주 근무시간 | 12H |
| | | | 6Н | 6Н | | | 17 | 누적 근무시간 | 12H |
| 6 | 7 | 8 | 9 | 10 | 11 | 12 | ٠.٨ | 주 근무시간 | 30H |
| 6Н | 6Н | 6Н | 6Н | 6Н | | | 2주 | 누적 근무시간 | 42H |
| 13 | 14 | 15 | 16 | 17 Annual | 18 | 19 | ٠.٨ | 주 근무시간 | 38H |
| 8H | 8H | 6Н | 8Н | leave 8H | | | 3주 | 누적 근무시간 | 80H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주 근무시간 | 48H |
| 12H | 12H | 12H | 12H | | | | 4주 | 누적 근무시간 | 128H |
| 27 | 28 | 29 | 30 | 31 | | | | 주 근무시간 | |
| | 12H | 12H | | | | | 5주 | 누적 근무시간 | |

- `20. 1월 총근무시간: 160H
- ■1.28. 기준 근무시간 현황
- 누적근무시간 : 140H
- 잔여근무시간 : 20H
- ■1.29. 12H 근무 희망시 연장근무 발생여부 판단
- = 총근무시간 누적근무시간 -
- 잔여의무근무시간
- = 160H 152H 12H = -4H < 0
- ⇒ 4H은 연장근무로 사전 승인 필요

휴일대체



- 휴일(휴무일)과 소정근로일을 1:1로 대체하며, 대체한 휴일에 근무시 총근무시간에서 차감합니다.
- 휴일(휴무일) 대체시 최소 24시간 전에 결재권자에게 승인 받아야 합니다.

대체 방식

- ■휴일(휴무일) ↔ 소정근로일 1:1 대체
- 대체된 휴일(휴무일)에 근무시, 소정근무로 보아 총근무시간에서 차감하며.
- 최초 소정근로일은 휴일(휴무일)로서 비근무

대체 단위

■1일 단위(표준근무시간인 8시간 단위)로 대체 가능

대체 기한

■당월 정산기간 내 대체휴일(휴무일) 사용 가능

[Jan 2020]

| Mon | Tue | Wed | Thr | Fri | Sat | Sun |
|-----|-----|-----|-----|-----|-----|-----|
|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31 | | |

: 소정근로일

: 휴일(휴무일)

: 휴일대체

[1.24. ↔ 1.28. 휴일대체]

■1.23.까지 휴일대체 결재

■1.24. : 근무시 총근무시간에서 차감

■1.28. : 휴일로써 비근무

연차휴가



 4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총근무시간에서 차감합니다.

근무 시간 차감 ■1일 연차 8시간 차감

■반차 4시간 차감

반차 사용 ■ 반차 사용시 의무근무시간(10:00 ~ 17:00) 미적용

■1일 최소 4시간 근무 필요

[Jan 2020]

| M | Т | W | Т | F | S | S |
|----|----|----|----|----|----|----|
|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31 | | |

- ■총근무시간:160H
- ■1.20.까지 근무시간
 - -누적근무시간:88H
 - 잔여근무시간: 72H

- 1 1.21. 1일 연차 사용시
- ■1일 연차 사용 8H 차감
- ■잔여근무시간
- = 72H 8H = 64H

- 2 1.21. 반차 사용시
- 반차 사용 4H 차감
- ■당일 4H 근무
- ■잔여근무시간
- = 72H 4H 4H = 64H

^{*} 본 문서는 VIAVI Solutions Korea의 자산이므로 외부유출을 엄격히 금합니다.

근무시간 인정기준



- 근무시간은 직원이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소정근무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 근무시간 = 회사 체류시간(근무 제공 시작 시각부터 종료 시각) 비근무시간

근무시간 인정

업무 수행

■소정근무 및 (승인된)시간외근무 시간

워크샵

■평일(월~금) 워크샵 1일 8시간 근무시간 인정

직무 교육

■실 교육 참여시간 근무시간 인정

훈련 참여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훈련: 전일 훈련 8시간, 반일 훈련 4시간 근무시간 인정

근무시간 불인정

식사 시간 개인 용무 사내 회식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고객사 회식

- ■원칙적 불인정
-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2:00를 한도로 근무시간 인정

^{*} 본 문서는 VIAVI Solutions Korea의 자산이므로 외부유출을 엄격히 금합니다.

근무시간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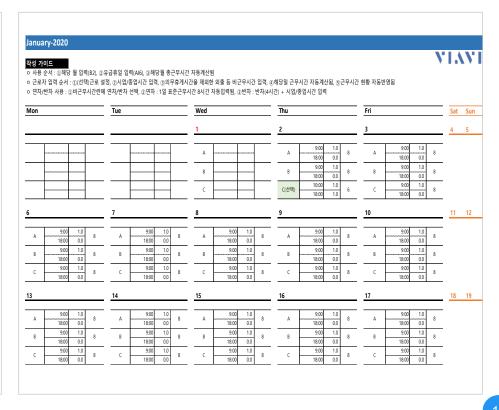
■ 매월 말일까지 해당월의 실 근무시간 내역을 매니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무 시간 단위

- ■최소 30분 단위 운영
- -매시 정각 및 30분 단위 인정

사후 입력

- ■근태(연차휴가, 출장 등)를 고려하여 근무시간 입력
- ■비근무시간(휴게시간, 개인용무 등)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하고 입력



Ground Rules

01

자율적인 근무시간 관리를 통한 업무 효율 극대화



02

근무시간보다 성과에 집중한 업무 수행



03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활용



바람직하지 않은 근무 형태 예시



선택근무제는 구성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근무시간 관리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운영기준에 대한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근무 형태 예시

-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근무시간 관리
- 반복된 총근무시간 미달
- 출퇴근시간 허위 기재
- 비근무시간(휴게시간, 개인시간)에 대한 근무시간 포함
-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지 못한 시간외근무의 입력
- 반복된 사후 시간외근무 승인 신청
- 업무상 필요 회의 불참 및 협업 저해

Q1

해당월 총근무시간을 초과하면 다음달 총근무시간에서 상계 가능한가요?

■ 근무시간은 매월 단위로 관리 및 운영됩니다.

따라서, 당월 총근무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다음달 총근무시간과 상계할 수 없으며, 당월의 연장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Q2

의무근무시간에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소정근무일 의무근무시간(10:00~17:00)에는 반드시 근무해야 하며, 10:00 이후 출근하면 지각,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사용하면 외출, 17:00 이전에 퇴근하면 조퇴로 처리됩니다.

지각·조퇴·외출로 인한 시간은 비근무시간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Q3

근무시간은 최소 몇분 단위로 입력 가능한가요?

■ 구성원간 원활한 협업 및 미팅 일정 조율, 통일적인 근무시간의 관리 단위 설정을 위해 최소 30분 단위(매시 정각 및 30분)로 근무시간 입력이 가능합니다.

Q4

출근 후 외출하는 경우, 근무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개인용무를 위해 외출한 시간은 비근무시간으로 근무시간에서 제외합니다.

가급적 의무근무시간대에는 구성원간 협업 및 미팅을 위해 외출을 자제하도록 하고, 의무근무시간 이외에는 자유로이 외출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나, 해당 시간만큼 비근무시간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Q5

휴게시간은 꼭 사용해야 하나요?

- 의무근무시간 중에는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1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12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휴게시간은 점심식사, 은행 방문 등 개인용무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6

정산기간 내 연장근무 가능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연장근무 한도시간은 해당월 일수 X 12 / 7로 산정되며, HR에서 사전에 매월의 연장근무 한도시간을 산정하여 공유합니다.

연장근무의 한도에는 휴일근무(주말, 근로자의날, 공휴일)도 포함되므로 철저한 근무시간 관리를 통해 연장근무 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20.1월 연장근무(휴일근무 포함) 한도 : 31일 X 12 / 7 = 53.1H

Q7

사전 승인을 하지 못했는데 갑작스런 업무로 인해 시간외근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연장·야간·휴일근무는 반드시 사전에 1차 부·팀장 → 2차 본부장 승인을 득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갑작스런 업무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후(영업일 3일 이내)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Q8

직원이 자발적으로 평균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가능한가요?

■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 한도(정산기간 평균 1주 52시간 = 소정근무 40시간 + 연장·휴일근무 12시간)를 초과하는 근무는 법 위반이므로 절대 불가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무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근무시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Q9

비상상황으로 특정주에 52시간 초과하여 근무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선택근무제에서는 1개월 평균 근무시간이 1주 52시간(= 소정근무 40시간 + 연장·휴일근무 12시간) 이내면 법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갑작스런 업무로 특정주에 52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다른 주에 52시간보다 적게 근무하여, 1개월 근무시간 평균이 주 52시간 이내가 된다면 괜찮습니다.

Q10

야간근무 다음날 늦게 출근하거나 쉴 수 있나요?

■ 선택근무제는 근무시간을 총량으로 관리하므로, 야간근무 다음날 근무스케줄 역시 본인이 선택할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근무시간(10:00~17:00)에는 근무하여야 합니다.

Q11

토요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 인가요?

- 수행시간에 따른 근무시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일(월-금) 해당월 총근무시간 이내에서 근무하는 것은 소정근무에 해당합니다.
 - 해당월 총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무에 해당합니다.
 - 평일 및 주말 구분없이 22:00 ~ 다음날 6:00 사이에 근무하는 것은 야간근무에 해당합니다.
 - 주말(토요일 및 일요일), 근로자의날, 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무에 해당합니다.

Q12

휴일(휴무일)대체로 근무할 경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휴일대체시 근무할 휴일(휴무일) 최소 24시간 전에 결재권자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대체된 휴일(휴무일)은 당월 말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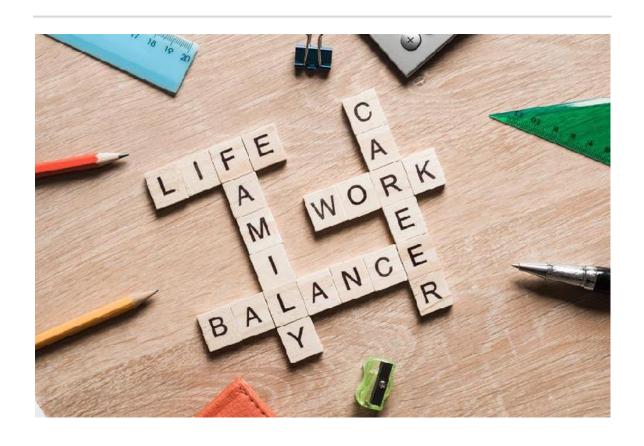
Q13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 반차 사용시 의무근무시간(10:00~17:00)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지만, 최소 4시간은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기 위해서는 1일 단위 연차(8시간)를 사용해야 합니다.

<u></u> 간주근무제



간주근무제란?



■ 간주근무제란 직원이 회사 밖에서 근무하여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 사전에 정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시행 시기

■2020. 1. 1부터 시행

대상 직원

■ Product Line Management

- NSE Sales(SSO, Sales, Wireless Sales)
- OSP Sales
- Wireless Field Application Engineer,Product Applications Engineer
- 단, 관리자인 위 부서의 부서장은 적용 제외

사용 기준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업무의 필요에 따라 자유로이 사용 가능

근무 시간

■근무시간

- 사무실 밖 근무 : 실제근무시간에 상관없이 1일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
- 사무실 내 근무: 09:00 ~ 18:00
- ■휴게시간
- 사무실 밖 근무 : 근무시간 중 1시간 자율 사용
- 사무실 내 근무: 12:00 ~ 13:00
- ■시간외근무
- 사전 승인이 없는 한 연장·야간·휴일 근무 불인정
- 포괄임금제에 따라 1주 3.5시간(=1개월 15.5시간)의 연장근무에 대하여는 급여에 포함됨

기타 사항

- ■근무시간내 소속부서와 업무 메신저, 전화 등 상시 연락체계 유지
- 긴급상황 발생시 결재권자 즉시 보고 및 지시에 따른 대처 필요

바람직하지 않은 근무 형태 예시



■ 간주근무제는 구성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운영기준에 대한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근무 형태 예시

- ■간주근무를 사유로 업무상 필요 회의 불참 및 협업 저해
- ■장시간 연락 두절, 근무태만
- ■업무성과가 저해되는 경우
- 영리행위 등 간주근무제 신청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하는 경우

Q1

회사 밖에서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몇시간인가요?

■ 회사 밖에서 근무한 경우 간주근무제를 적용하여,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 이더라도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8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동일하게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Q2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외근가는 경우 근무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외근을 간 경우에도 간주근무제를 적용하여, 1일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 사무실에서만 일한 경우 9:00 ~ 18:00의 근무시간이 적용되며, 연장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고 수행해야 합니다.

Q3

재택근무시 자유롭게 1일중 8시간 근무가 가능한가요?

■ 재택근무라 하더라도 9시부터 18시까지의 근무시간은 가급적 준수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 및 저녁 10시 이후의 야간근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Q4

간주근무시 주의사항은 없을까요?

-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직원들의 자유로운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간주근무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간주근무시에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근무와 동등한 수준의 업무수행 노력이 필요하며, 최대한 독립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구축하여 근무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간주근무시 근무시간 이내에는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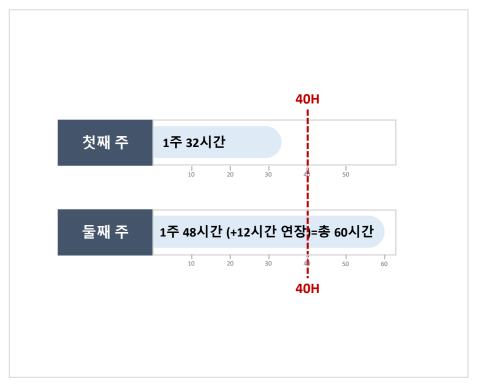
탄력근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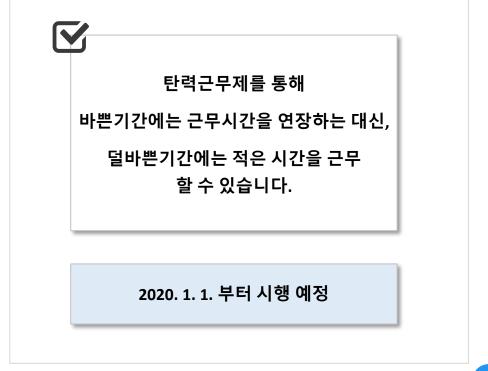


탄력근무제란?



- 탄력근무제란 특정 근무일의 근무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무일의 근무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2주의 단위기간 동안 1주 평균 40시간이 되도록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업무량을 감안하여 해당 기간에는 더 근무하고, 대신 덜 바쁜 기간에는 적은 시간을 근무 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및 근무시간



- 탄력근무제는 Operations 부서의 production 및 repair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량 증가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단위기간 내에는 정해진 근무일별 근무시간에 따라 근무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 ■Operations 부서의 production 및 repair 직원
- 임신부에 대하여는 탄력근무제 적용 불가하여9:00 ~ 18:00 근무 실시, 부서장은 적용 제외

적용 기준

- 평소에는 9:00 ~ 18:00 근무 수행이 원칙
- 다만, 업무량 증가로 인하여 탄력근무제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만 회사의 사전 공지를 통해 적용

단위 기간

■2주

근무 시간

- 단위기간 내 근무일 및 근무일별 근무시간 (오른쪽 참조)
- ■근무시간은 회사의 업무 사정에 따라 사전 고지 후 변경 될 수 있음

연차 사용

■1일 연차휴가시 8시간 사용한 것으로 하고, 과·부족시간만큼 다른 근무일에 근무시간을 조정함

[탄력근무제 근무시간 Case1]

| 7 | 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합계 |
|----------------------|------|-----|-----|-----|-----|-----|----|
| Busy Week | 소정근무 | 9.6 | 9.6 | 9.6 | 9.6 | 9.6 | 48 |
| Non- Busy Week | 소정근무 | 6.4 | 6.4 | 6.4 | 6.4 | 6.4 | 32 |

[탄력근무제 근무시간 Case2]

| <u>. – </u> | | 1 | <u>-, </u> | | | | |
|--|------|-----|---|-----|-----|-----|----|
| |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계 |
| | 소정근무 | 9.6 | 9.6 | 9.6 | 9.6 | 9.6 | 48 |
| Busy Week | 연장근무 | 2.4 | 2.4 | 2.4 | 2.4 | 2.4 | 12 |
| | 합계 | 12 | 12 | 12 | 12 | 12 | 60 |
| 0.1 | 소정근무 | 6.4 | 6.4 | 6.4 | 6.4 | 6.4 | 32 |
| Non- busy | 연장근무 | - | - | - | - | - | - |
| Week | 합계 | 6.4 | 6.4 | 6.4 | 6.4 | 6.4 | 32 |

바람직하지 않은 근무 형태 예시



■ 탄력근무제는 구성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설정하는 것으로 운영기준에 대한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근무 형태 예시

- ■사전 정해진 근무시간의 미준수
-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근무시간 관리
- ■업무상 필요 회의 불참 및 협업 저해

Q1

탄력근무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불가한가요?

■ 2주 단위 탄력근무시, 특정 주에 48시간 (연장근무시 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설정된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시간외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결재권자의 검토 및 승인 후에 시간외근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Q2

탄력근무제 기간에 설정된 근무시간은 변경 가능한가요?

■ 단위기간 중 근무시간은 업무량을 고려하여 설정된 근무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특이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설정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 근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설정된 근무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IV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개정



취업규칙 개정

별첨 문서 참조

근로계약서 변경

1 고정연장수당의 명시

정의

- ■기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자 함
- ■월급여의 10%를 연장근무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할 것임
- 월급여의 10%에 해당하는 월 15.5시간, 주3.5시간의 연장근무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추가 지급 안함
- 월15.5시간을 넘는 연장, 야간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승인을 받은 경우, 별도로 지급할 것임

임금 구분 ■기존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예정임

| Category | Amount (KRW) | |
|-----------------------------|--------------|-------------------------|
| Basic salary | 000,000 | 209 hours per month |
| Fixed Overtime Allowance | 000,000 | 15.5 hours per month |
| Meal allowance | 000,000 | - |
| Total monthly salary | 000,000 | - |

2 유연근무제 적용 명시

- ■각 직원별로 적용되는 유연근무제를 적용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자 함
 - 선택근무제
- _ 간주근무제
- 탄력근무제
- 관리감독자

Thank you